

보도시점 2024. 11. 19.(화) 12:00 (수요일 조간) 배포 2024. 11. 18(월)

#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·관리 최우수 지자체로 청주시 등 3곳 선정

- 대전시 등 6곳 우수 지자체로 선정, 에코비트워터 등 3곳 발전상 수상

환경부(장관 김완섭)는 전국 지자체 106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한 해 동 안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·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청주시, 진주시, 고흥군 등 3곳을 그룹별\*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.

\* 총 시설용량 기준 3개 그룹으로 분류 : I 그룹(10,000m³/일 이상), Ⅱ그룹(10,000m³/일 미만~1,500m³/일 이상), Ⅲ그룹(1,500m³/일 미만)

이와 함께 대전시, 안성시, 창원시, 안동시, 보은군, 창녕군 등 6곳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, 전년 대비 평가점수 인상폭이 가장 높은 시설의 운영기관인 ㈜에코비트워터, 광양시, (사)군위농공단지협의회 등 3곳은 발전상을 받는다.

이번 평가는 폐수 유입률, 처리 효율, 방류수 수질관리 및 안전관리 등 14개 항목에 대해 유역(지방)환경청에서 1차로 평가했고, 환경부 심의위원회의 2차 평가를 거쳤다.

환경부는 11월 28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열리는 '2024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·운영 연찬회'에서 최우수 등 수상기관 12곳에 대해 환경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할 계획이며, 수상기관의 발표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전국 지자체 및 운영기관 등에 공유할 예정이다.

아울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·관리 우수기관에 대한 자세한 평가 결과를 환경부 누리집(me.go.kr)에 공개할 예정이다.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실장은 "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·관리 실태평가가 지자체 간 경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,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"라고 밝혔다.

- 붙임 1.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·관리 실태평가 개요.
  - 2. 실태평가 항목 및 배점. 끝.

담당 부서	환경부	책임자	과 장	김경록 (044-201-7060)
	수질수생태과	담당자	사무관	김상현 (044-201-7068)







## 붙임 1

###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·관리 실태평가 개요

- □ (목적)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·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시설 운영·관리의 효율성 제고
- □ (대상) 전국 106개 지자체

구 분	계	l 그룹	II 그룹	Ⅲ그룹	비고
총시설용량 (m³/일)		10.000 이상	10,000 미만 ~1,500 이상	1,500 미만	
지자체 수	106	25	35	46	

#### □ (평가방법)

- (1차평가) 지자체의 제출 서류와 처리시설별 현장조사 및 평가(환경청)
- (심의委 평가) 1차평가 결과, 그룹별 상위 5개 지자체 운영·실적 및 개선사례 발표, 발표를 토대로 심의위원회의 평가위원 정성 평가
- (종합평가) 1차평가 점수와 심의위원회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그룹별 순위를 확정하고 우수기관 선정
- □ (평가 결과) 총 12개소(최우수 3, 우수 6, 발전상 3)
  - 그룹별 우수기관 : 그룹별 상위 3개 지자체

구 분	l 그룹	II그룹	III그룹
최우수	청주시	진주시	고흥군
우수 1	대전시	창원시	보은군
우수 2	안성시	안동시	창녕군

○ 발전상 : 전년 대비 평가점수 인상폭이 가장 높은 시설의 운영기관

구 분	l 그룹	그룹	III그룹	비고
 발전상	㈜에코비트 워터	광양시	(사)군위농공단지	
달신경	㈜에꼬미드 쿼디		협의회	

#### □ (포상계획) 12개 기관에 포상금 지급

구 분	최우수상	우수상1	우수상2	발전상
금액(백만원)	15	10	5	2~5

# 붙임 2 실태평가 항목 및 배점

평가항목	배점
1. 운영분야	60
○ 폐수 유입률	15
○ 오염물질 유입률	5
○ 폐수처리 효율	15
○ 처리시설의 오염물질 분석	9
○ 경제성	5
○ 재이용률 및 자원화율	6
○ 처리시설 운영자료의 전산화 정도	3
○ 부지경계선 복합악취 평균농도	2
2. 관리분야	40
○ 해당분야 기술자격증 보유율	5
○ 운영요원 법정교육 준수율	5
○ 배출업소 관리시스템	10
○ 비용부담계획의 수립·관리	10
○ 안전관리 등 재난대비	5
○ 폐수관로대장의 구비	5
3. 가·감점	-
○ 시설개선 등 우수사례 포상	3
○ 폐수유입률 향상을 위한 계획수립 및 이행실적	3
○ 운영 및 관리분야 향상성	6
○ 지자체 처리시설 수	5
○ 별도 배출허용기준 수립 여부	-3
○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 횟수(건별 추가 감점)	-10
○ 서류심사 자료 제출기한 미준수	-2
○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의 중대재해 발생(건별 추가 감점)	-20
○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(건별 추가 감점)	-5
○ 기술진단 실시여부(건별 추가 감점)	-3
○ 생태독성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수질분석주기 준수 여부	+2 ~ -2
○ 처리시설 설치공사 완료 후 시운전을 하지 않는 시설이 있는 경우	-10
○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완료 후 준공보고를 하지 않거나 처리시설을 지자체에	10
귀속(또는 기부채납) 시키지 않고 임시 운영 중인 시설이 있는 경우	-10
4. 기타	_
○ 평가대상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처리시설 및 지자체는 최하위로 평가한다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8조의3(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·관리기준)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, 제50조(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·관리 등)제1항을 위반한 경우 -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- 운영(위탁·재위탁 포함)기관이 「물환경보전법」 제4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른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	최하위 평가